

보험범죄의 보안대책에 관한 연구

박형식*

요 약

현재의 보험범죄에 대한 보안대책은 보험금 지급심사단계에서 적발중심적인 사후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험범죄의 특성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규명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 중복가입여부, 자발적 가입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사고 발생시 철저한 조사나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악성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보험범죄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계약시에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신용상태, 사고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과 사회관계망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험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사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A Study on The Security Measures of Insurance Crimes

Park Hyung Sik*

ABSTRACT

Security measures for the current insurance crime has focused on the capture oriented and reactive response in the screening stage of insurance payments. However, since leaving the damages that can not be healed by post-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insurance crimes in advanc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try to identify problems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cases of the insurance crimes,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o it.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insurance system that causes the insurance crimes are, First, When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it is too inattentive to confirm about the credit status of the policyholder, duplicate join or not, whether voluntarily sign up etc. Second, a thorough investigation or criminal charges in case of insurance accident is not being done properly. Third, information exchange and management to malicious policyholders is not being done properly. Therefore, in order to guard people from insurance crimes, First, it should strengthen the audit of such credit conditions, accident experiences in the insurance contract at the policyholders. Second, we need to block insurance crimes in advance through the continuous upgrades of 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s and social network.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urveillance systems for the insurance crimes by the information sharing.

Key words : Insurance, Insurance Crime, Security, Security Measures, Guard

접수일(2016년 10월 9일), 수정일(1차: 2016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2016년 10월 30일)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 서론

원래 보험제도는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이다. 특히 현대 사회는 지진이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붕괴사고와 같이 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상호부조적 성격의 보험은 공동체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험제도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이 보험범죄이다. 보험범죄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발생하였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이유는 보험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사행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1]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2]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3]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의 ‘불확정한 사고 발생’이나 보험업법에서의 ‘우연한 사건 발생’은 도박이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사행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행성은 보험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고의에 의하여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발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강한 범죄의 유혹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4] 이러한 보험범죄는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게도 하지만 보험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협회, 각 보험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험범죄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보험관계자들의 노력은 주로 보험범죄가 발생한 후에 적발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에서의 적발 중심적인 사후대응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5] 범죄자들 가운데는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보험범죄가

제3의 범죄를 동반한 경우, 사후처벌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범죄의 근원은 정보비대칭성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범죄를 할 의도를 갖고 있지만, 보험사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보험범죄의 위험이 큰 보험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그 명칭이 무색하게 주로 처벌 등 보험사기 발생 후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장치는 미흡하다.[6] 그리고 보험범죄자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미수범이나 상습범까지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험범죄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보험범죄의 발생현황 및 실제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후적인 적발이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개념 정의

보험이란 동일한 위험에 처한 다수의 사람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경제적 수요에 대비하고자 추상적인 위험단체(보험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 내에서 통계적 기초와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산출된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미리 각출하여 기금(공동기금)을 만든 후 약정된 사고(보험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구성원에게 그 기금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적 급여(보험금)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이다.[7]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8]

보험범죄란 ‘보험사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야기하

거나 보험사업자를 기망하는 등 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보험금 또는 보험료를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9]

2.2 보험범죄의 발생원인

보험범죄의 발생원인은 첫째,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이라는 사행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행성은 기망의 유혹을 싹트게 하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보험에는 기망의 유혹이 그림자처럼 존재한다.[10]둘째, 보험계약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보험범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 고지의무위반이라든가 보험금과잉청구 등 연성사기에 대하여는 전혀 범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금을 못 타면 바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낮은 처벌수준 및 보험회사의 소극적 태도가 보험범죄의 원인이 된다. 보험범죄는 적발자체도 쉽지 않고,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준이 중대한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그 처벌수준이 경미하여 보험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보험사측에서도 범죄가 적발되어 보험금액이 환수 조치될 경우, 형사처벌을 포기하거나 계약해지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보험사의 수사권 부재 및 수사기관의 전문인력 부족이 보험범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에서는 직접 수사권이 없어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는 보험범죄 수사인력이 관할서당 한두 명에 불과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로인하여 보험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11]

2.3 보험범죄의 특성

보험범죄는 첫째, 복합성을 띤다. 보험범죄는 보험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 살인, 방화, 폭행 등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범행수법의 다양성을 가진다. 보험제도는 담보별로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파생된 상품의 종류는 350여 종이나 된다. 따라서 보험범죄의 수법도 350여 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범행수법이 등장하게 된다. 셋째, 입증의 곤란성이다. 보험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12]넷째, 죄의식의 결여이다. 보험범죄자는 위험보장이라는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과 소멸성 보험료에 대한 보상심리가 내재되어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도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족이나 근친 등을 대상으로 살인, 상해, 방화 등도 서슴지 않는 등 비도덕적인 성향을 보인다. 다섯째, 범죄피해의 간접성 및 광범위성을 가진다. 보험범죄는 외견상 보험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 보험료 인상을 통해 광범위한 미래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피해의 간접성을 나타낸다.[13]

3. 보험범죄 사례분석 및 문제점

3.1 보험범죄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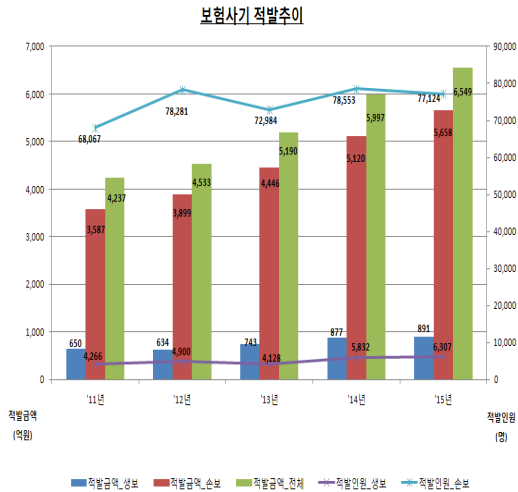
3.1.1 보험사기 적발실적

<표1>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013	2014	2015	증감
적발 금액	생보	74,347	87,708	89,077	1.6증
	손보	444,613	512,021	565,808	10.5증
	계	518,960	599,729	654,885	9.2증
적발 인원	생보	4,128	5,832	6,307	8.1증
	손보	72,984	78,553	77,124	1.8감
	계	77,112	84,385	83,431	1.1감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센터 자료

2) 보험사기 적발추이



(그림 1)

전체적으로 보면, 적발금액은 증가하였는데, 적발인원은 작게나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험범죄에 대한 적발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2011년에 비해서 6,549억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적발인원은 생명보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손해보험은 2015년도에는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다.

3.2. 보험범죄 사례분석

3.2.1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장모·처 보험 살인사건

3.2.1.1 개요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처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운전자상해보험, 종합보장보험, 종신보험 등을 가입하였다. 그리고 2005.10.29. 안산소재 장모 집에서 휘발유 등을 거실에 뿌리는 방법으로 방화하여 처와 장모를 살해하였다. 강호순은 마치 처가 모기향에 의한 실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3개 보험사로부터 총 4억8천여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14]

3.2.1.2 분석

강호순은 수입이 변변찮은데도 과도하게 많은 보험을 가입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사건 발생 초기에 방화 사건으로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였지만, 범죄혐의를 밝히지 못하였다.

3.2.2 마취제 투약하여 남편 살해한 사건

3.2.1.1 개요

2007.10.14. 아침, 자신의 집에서 남편 A씨가 사망하였는데, 경찰의 부검결과 A씨 몸에서 마취제가 발견되었다. 경찰의 수사결과 부인 B씨가 자신의 근무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마취제를 절취하여 남편에게 마취약을 투여하고 살해한 것이었다. B씨는 아파트 취득세를 내지 못하여 집이 압류될 상황에 처하자, 일주일전 남편이 사망하면 4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남편을 살해한 것이었다.[15]

3.2.1.2 분석

이 사건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의 재정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보험가입을 받아주어서 발생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3.2.3. 가족보험사건

3.2.3.1 개요

전주지방검찰청에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새벽 3시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사기극을 벌이려던 것이었다. 아들은 8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이미 4억 원은 수령한 상태였다. 또한 가족들에 대한 사고경력 및 보험금 수령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보험범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되었다.[16]

3.2.3.2 분석

대부분의 보험사들에서는 피의자들의 보험경력에

대하여 조회조차 하지 않고, 보험 상품판매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였다. 또한 보험사기를 인지하고서도 사실규명을 하지 못한 채 증도에 포기하였고, 경찰에서도 보험범죄에 대한 혐의점을 밝히지 못한 사건이었다.

3.2.4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사건

3.2.4.1 개요

2008.4.12. 평택경찰서에 교통사망사고 신고가 접수되었다. 운전자는 고물상에서 고물을 신고 후진하다가 차량후미에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역과 하여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험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8억 원에 달하는 보험에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확인 결과 피해자의 사장과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운전자가 공모하여 보험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17]

3.2.4.2 분석

친·인척 등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명의로 매달 50여만 원이 넘는 돈을 납부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전혀 제지가 없었다는 것은 보험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3.3. 보험범죄의 문제점

3.3.1 보험계약 체결시 허술한 확인

위 사례분석을 종합해보면, 강호순 사건에 있어서는 계약당시의 수입이나 중복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취제투약살해사건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재정 상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보험사기단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경력에 대한 조회가 없었다. 또한 교통사고 위장 살인사건의 경우 친인척 등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거액의 보험을 가입한 것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보험범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의 직업, 경제력, 신용상태, 과거의 병력, 사고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 보험사에 계약을 한 것이 있는지, 보험가입의 경위, 즉 모집사원의 권유에 의한 것인지 자

발적인 가입인지, 과거 재해사실의 유무 등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제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험범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철회하거나 보험의 인수제한, 보험요율의 조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18]

3.3.2 계약체결후의 지속적인 관리 부실

강호순은 2005.10.17 상해보험, 2005.10.24. 종합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2005.10.29.에 보험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마취제투약살해사건에 있어서도 피의자는 2007.10.7.과 10.8에 보험에 가입하고 2007.10.14.에 보험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이 보험범죄자들은 자신들이 감당하기에 과분한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체결 후 2~3개월 이내에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보험범죄가 발생한 사건의 보험사에서는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자의 재정상태, 가족관계, 단기간에 타 보험사에 중복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3.3.3 보험약관의 미비

일부 보험사의 보험약관은 너무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약의 보험계약자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원이 제기되면 일관성 있는 처리보다는 분쟁을 진정시키는 입장에서 처리하는 경향이 많다. 이는 오히려 민원을 더욱 증가시키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에 가능한 한 문제를 명백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3.3.4 보험사고의 조사와 형사고발 미흡

가족보험사기단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 보험사고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사고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강호순 사건의 경우에도 보험범죄의 의심을 하였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보험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보험범죄의 유혹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일단 범죄의 의심이 있으면 보험자 스스로 사고의 원인과 청구 서류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3.3.5 보험자간의 정보교환과 정보 집중관리 부족

강호순사건, 마취제투약살해사건, 가족보험사건간 사건 등에서 보듯이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보험사에 많은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보험계약을 더 많이 유지하려고 하는 보험자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 간에 악성계약자의 명단, 거절된 계약의 내용, 중복보험여부 또는 부당 진료행위를 한 병원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한 기관에서 이러한 정보를 집중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보험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19]

4. 보험범죄 보안대책

보험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양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4.1. 정보의 공유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도 보험범죄 위험이 큰 보험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보험사들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ICPS(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험사고 및 지급이력 정보를 집중하고 있지만,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과학적이고 광범위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면, 보다 철저히 보험범죄가 높은 보험가입이나 지급청구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하지만, 정보공유의 문제에서 감독기관이나 정보보유기관

들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소비자 본인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공유된 정보의 내용을 소비자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보험사 간 경쟁에 따라 정보공유를 동의한 고객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나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 선택에 입각한 정보 공유 확대는 보험사기 방지는 물론 정보제공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20]

4.2. 신고포상금 제도의 적극 활용

최근 보험범죄는 브로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나 수사기관 등 외부에서 보험범죄를 적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보험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활발한 신고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추어서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절차도 간소화하였다. 인터넷 신고시에는 본인 인증방식을 현행 아이폰 이외에도 보다 간편한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전화신고시 대기가 길어질 경우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담당자가 콜백할 수 있는 예약콜 기능도 도입하였다.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신고나 전화신고보다 더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의 블랙박스이다. 보험범죄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생생하게 녹화하기 때문에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활용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확실한 내부자의 제보와 가장 강력한 증거확보를 통하여 보험범죄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3.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과 사회관계망 분석(SNA)의 업그레이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은 보험회사에서 입수된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혐의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고, 사회관계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계약자, 설계사, 병원 등 개별 혐의자간의 관계

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보험사기인지 시스템과 사회관계망분석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이는 또한 보험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4.4. 소득심사의 강화

모든 보험사가 고객의 신용등급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고, 가입건수의 상한선을 둔다면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보험업계에서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자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모이는 보험사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보다 과도한 사망보험 가입 유혹을 원천봉쇄하기로 하였다. 현재도 보험사들이 자사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사망보험금 계약인수심사를 강화했으나,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를 전 보험사가 공유할 경우 다양한 변수를 파악해 보험관련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결 론

장래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좋은 제도인 보험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치밀하게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보험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철저히 적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보험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보험과 관련하여 살인이나 강도, 절도,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고 나면, 상처를 치유할 수 없거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상처가 아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계약시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보험범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과 사회관계망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관계자들과 보험계약자, 수사기관 등이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

인 신고만이 우리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험범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대법원 1987.9.8. 선고 87도565 판결
- [2] 상법 제638조
- [3]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 [4] 이상원, “보험범죄의 특성과 보험사기의 구성요건”, Business, Finance & Law 제56호, p.7, 2012.
- [5] 이용우, “보험범죄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손해보험 통권 제522호, p.27, 2012.
- [6] 이성구, “보험사기, 정보공유로 예방해야”, 파이낸셜뉴스, 2016.9.8.
- [7]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01.
- [8]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 제1호
- [9] 이병희, “보험사기범죄의 실태와 방지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15, 2002.
- [10] 조해균·양왕승, “범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33권, p. 171, 2001.
- [11] 이용우, 전계논문, p. 22.
- [12] 금융감독원, ‘민생침해 금융질서교란행위 유형’, 금융감독원, 2004.
- [13] 이병희, 전계 연구보고서, p. 66.
- [14]경기지방경찰청, ‘경기·서남부 부녀자 실종사건 수사실무사례’, 경기지방경찰청, 2009.
- [15]이득로, “보험범죄 최근 경향 및 대응방안”, 손해보험 통권 제490호, p.33, 2009.
- [16]전주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06.6.30.
- [17]이득로, 전계논문, pp. 31-32.
- [18]조수웅, “보험범죄와 그 방지대책”, 한국보험학회지, p. 67, 1993.
- [19]조수웅, 전계논문. p. 68.
- [20]이성구, 전계기사.

[저자 소개]



박형식 (Hyungl-Sik Park)

1985년 4월 경찰대학교 행정학 학사
2001년 2월 경희대학교 행정학 석사
2007년 8월 광운대학교 행정학 박사
2008년~현재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mail : k62711@naver.com